



고수의 자료

산업현장 이것만은 지킥시다!



기본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업장 개요, 근로자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상황	조치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높이 31m 이상 건축물,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재해예방 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월 2회의 지도를 받아야 함

노사 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10계명

핵심포인트

- 반드시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 안전장치 해제 사용 및 구조 임의변경 금지

사용시 확인사항

- | | |
|----------------------------------|-------------------------------|
| ① 운전자 자격유무 | ⑥ 안전검사 실시유무 |
| ②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유무 | ⑦ 장비 사용장소의 지반상태 |
| ③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 ⑧ 줄걸이 용구의 외관 손상 유무 |
| ④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 배치 유무 | ⑨ 운전자 및 장비작업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유무 |
| ⑤ 장비 정비수집 유무(수리, 보수, 점검, 부품교체 등) | ⑩ 붐, 작업대 연결부재 등 주요 구조부 이상 유무 |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장치 확인

- **[굴삭기]** 후진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버킷 이탈방지장치
- **[트럭류]** 후진경보장치, 후방카메라,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혹 해지장치
※ 카고크레인의 작업대 부착 사용금지
-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 작업대(탑승함) 등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 탑승작업 시 안전대 사용
- **[지게차]** 후방확인장치, 좌측안전띠 착용

제조업



안전인증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30품목) 및 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제품**을 구입·사용하여야 함

안전검사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13종*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안전검사 대상(13종):**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 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주기

최초 안전검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안전검사

2년마다(검사필증 유효기간 내)

방호조치

내용

지게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포장기계 6종류는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조업 비정형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 예방

사고예방 조치

제조업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비정형 7대 사망위험 기계:** 컨베이어, 혼합기, 식품제조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 로봇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실행내용



-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확보한다.
- 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용기 및 포장에 반드시 경고표시를 붙이거나 인쇄한다.
- ③ 취급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해성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작업장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실시한다.
- ⑤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 ⑥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⑦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⑧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 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 ⑩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는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실행내용



- ① 물이나 기름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미끄럼방지신발을 착용한다.
- ②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을 실시한다.
- ③ 무거운 물건은 이동대차 또는 2인 1조로 운반한다.
- ④ 이륜차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 이륜차의 제동등, 전조등, 후미등 및 제동장치 등을 점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 ⑤ 뜨거운 음식 등은 이동대차로 운반하고 화상방지 장갑을 착용한다.
- ⑥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 ⑦ 외부인에 의한 수리·점검 작업 시 원청사에서 안전관리 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한다.
- ⑧ 바닥 물청소,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라인(Safety line)을 설치한다.
- ⑨ 계단 끝단과 경사진 통로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 ⑩ 야간작업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